



1. 사용신고

개요

- 국내·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관련법령

- 자동차 관리법 제48조, 동법 시행규칙 제99조

소요비용

- 취득세 : 125cc미만 과세표준액의 2%(50cc미만은 면제), 125cc이상 과세표준액의 5%(과표 50만원 이하는 면세)
- 수입인지 3,000원

구비서류

■ 국내제작 자동차

-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
- 의무보험가입증명서
- 자동차 제작증
-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■ 수입이륜자동차

-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
- 의무보험가입증명서
-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
- 이륜차제작증
-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
-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■ 개별수입 이륜자동차

-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
- 의무보험가입증명서
-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
-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
-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
-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
- 수입자 인감증명서
-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

■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

-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
-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
- 양도증명서(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)
- 의무보험가입증명서
-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
-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www.mltm.go.kr

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화

2012년부터 50cc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을 하여야 합니다

사용신고기간 **2012. 1. 1 ~ 2012. 6. 30까지**
미신고 운행적발 시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

✓ **개 요**

-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 및 도난사고 시 사건 해결 및 피해보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사용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✓ **사용신고대상**

- 스쿠터 등 최고속도 25Km이상 이륜자동차
-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 가능한 차량제외(전기보드, 모터보드, ATV, 의료용 전동 휠체어 등)

✓ **사용신고 절차**

- 신고기한: 2012. 1. 1 ~ 2012. 6. 30까지
- 신청인: 이륜자동차 소유자
- 신청하는 곳: 000차량등록사업소
- 구비서류(소유권이 확인되는 아래 서류 중 한가지)
 - 이륜차 제작증, 수입사실증명서
 - 매매계약서, 증여증서
 - 소유사실보증서(신분증사본)

✓ **문 의: 000 차량등록사업소**

〈신고제외 대상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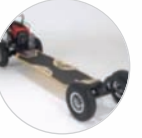
모터보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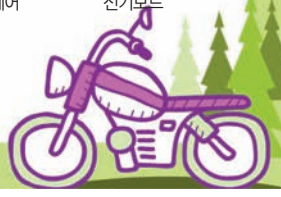
차동장치가 없는
ATV(사발이)



전동휠체어



전기보드





2. 변경신고

개 요

-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,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관련법령

- 자동차 관리법 제48조, 동법 시행규칙 101조

구비서류

■ 사용본거지(주소)가 변경된 경우

- 경기도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(단, 단체 또는 법인은 제외)
(예: 수원, 안양, 군포 등 경기도 내에서 성남으로 전입한 경우는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)
- 경기도를 제외한 시·도에서 전입한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
▶ 구비서류

-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
- 이륜자동차 신고필증
- 이륜자동차 번호판
-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초본)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
- 법인인 경우: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(말소사항포함), 사업자등록증명원, 폐업사실증명원
-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▶ 소요비용

- 번호판 가격별도(지역별)

■ 소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

-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
▶ 구비서류

-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
- 이륜자동차 신고필증
- 주민등록상 개인인 경우 개명 시 자동변경 됨으로 신고의무 없음
- 법인인 경우: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(말소사항포함), 사업자등록증명원, 폐업사실증명원
-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

▶ 소요비용

- 등록면허세: 125cc이상 7,500원

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(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)

-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
▶ 구비서류

-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
- 이륜자동차 신고필증
- 양도증명서
- 의무보험가입증명서
-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지참)

▶ 소요비용

- 취득세 :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%
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%(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)
- 수입인지 3,000원
- 번호판 ○○원(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)

※ 소유권변경 기한

매매의 경우 15일, 증여의 경우 20일, 상속의 경우 3월 이내,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

3. 폐지신고

개요

- 이륜자동차의 폐차, 도난, 분실 사용폐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관련법령

- 자동차 관리법 제48조,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

신고기간

- 폐차말소, 도난말소, 분실, 사용폐지 : 15일 이내

위반시 과태료

-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: 20,000원
-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~ 180일 : 60,000원
-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: 100,000원



소요비용

- 등록면허세 : 125cc 초과인 경우 7,500원

구비서류

-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
- 이륜자동차 신고필증(분실시 분실사유서로 대체)
- 이륜자동차 번호판(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)
-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(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)
-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(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함)
- 법인인 경우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(사업자등록증명원, 폐업사실증명원)
-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※ 법원 판결 말소시

확정 판결문(소유권에 관한 판결)

4. 번호변경신고

개 요

-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,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관련법령

-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

소요비용

- 번호판, 봉인 : 〇〇원
- 봉인만 구입시 : 〇〇원
- 등록면허세 : 〇〇원

구비서류

- 이륜자동차 번호판·봉인 재교부 신청서
- 이륜자동차 번호판(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)
-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(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)
- 이륜자동차 신고필증
-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5. 사용신고필증재교부 신청

개 요

-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분실이나 훼손 하신 경우에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 합니다.

관련법령

-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

구비서류

- 이륜자동차 증명서 재교부 신청서
-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(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)

6. 과태료처분

구 분	위 반 내 용	과태료처분
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	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	500,000원
	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	20,000원
	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때	200,000원
	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	최고 100,000원
	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(대인보험)	최고 200,000원
	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(대물보험)	최고 100,000원
	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(경찰서부과)	범칙금 100,000원
	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을 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

※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%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%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.

